

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	
	대표자 주소	전화번호		

사무소 소재지

「만화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
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신청인 제출 서류	1.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양성 계획서 1부 2. 교육과정(현장실습을 포함합니다)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3.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4.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·설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